

의안번호	2220718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9.14.
추계번호	26F4193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관계 기관 간 불법 물품 밀수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4조의11(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) 제3항	○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- 마약류등, 총포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·단속을 위하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4조의11(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) 제3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관세청 및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불법·유해물품 및 마약류·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.

-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·불량·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64조의10),
-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며(안 제264조의11 제1항),
- 관세청장이 마약류·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·제한 물품을 효과적

으로 감시·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·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64조의11 제2항),

-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4조의11제3항).

□ 개정안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시스템간 연계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식이 불확정적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